CCTV 교체공사 시공 및 설계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2. 단지개요

구 분	내 용		
단 지 명	래미안슈르아파트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2, 별양로 66-11		
단 지 규 모	48개동 3,143세대		
연 면 적	610,239.525㎡	건 축 면 적	30,173.475㎡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업내용 : 현재 설치된 CCTV 시설 상태를 점검하여, 당 아파트 요구사항에 적합한 CCTV 설치방식으로 설계 및 시공

나. 설계용역

① CCTV 교체공사를 위한 설계설명서(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는 설계조건, 기술검토, 시스템 용량 계산 등), 설계도면(배치도, 시스템 구성도 등), 공사 시방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작성 제출(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의 제출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함.)

② 녹화기, 카메라 등 제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한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설계해야 함.

③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에 대한 기술적 의견 지원

④ 응찰업체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기술적 의견 지원

⑤ 관공서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대관업무 일체 수행

다. 공사내용 :

① 단지 내 CCTV 카메라 교체공사

② 각 동 광 케이블 포설 구축

③ 설치 예상 카메라 대수 : 779대(자세한 내용은 현장설명회시 자료 참조)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계약에 따름)

4.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공고일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법인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의거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동법제7호에 의거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제1항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업체

라. 제출서류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CCTV 설치공사 5건 이상(부분공사 및 하도급

제외) 및 500세대 이상 설계용역 5건 이상 실적 보유업체
마.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2인 포함 5인 이상 보유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불참 시 입찰 배제)

6. 제출서류(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제27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① 입찰서 1부(해당사항은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1) 산출내역서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해당시 제출 할 것)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제출할 것) 각 1부.
(4)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②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증 사본(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각 1부.
⑥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확인서(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1년간)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4대 보험 중 1개 가입 증빙자료 포함) 1부.
(4) 장비보유 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부.
(5) 업무실적증명서(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계약기간/단지명/전화번호 명기) 1부.

(※ 주의 :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완료된 해당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이행실적증명서(계약기간, 연락처, 세대수)사본,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등을 의미하며 택1하여 제출한다. 계약체결 후 착수 전(계약시작 전) 또는 계약이 진행 중인(계약만료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이후)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사업제안서(시공 계획서, 회사소개서 및 지원서비스 능력 등 포함) 1부.
⑦ 카메라, 녹화기, 허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7. 현장설명회 – 공사내용 등 배부함

가. 일시 및 장소 : 2020년 10월 28일(수) 15: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서류마감 : 제출 일시 및 제출 장소

1) 서류마감 : 2020년 11월 3일(화) 18:00시 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9.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사업제안 설명회 : 2020년 11월 4일(수) 19:00~(일정은 단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나. 개 찰 일 시 : 2020년 11월 4일(수) 사업제안 설명회 이후(일정은 단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다. 개 찰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업체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에 의거 낙찰자로 선정.

11.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등)

12. 계약 체결

낙찰자는 당 아파트로 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일 5일전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되 그 납부율은 총 계약금액의 20%로 한다.

13. 하자보증금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 예치율은 총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14. 기타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산출 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3.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할 것.

나. 설계비는 2020년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정보통신 분야 적용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에 따라 산출할 것. (설계 별도 계약)

다. 산출내역서는 설계비, 공사비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며, 산업안전보건비는 사후정산 함.

라.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공사현장을 파악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마. 입찰참가 자격에 부적합한 사업자 및 제출서류 누락업체는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그 계약을 무효처리한다.

바.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하고, 낙찰을 무효로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하자, 담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20%) 당 아파트에 귀속함.

아. 낙찰자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만약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낙찰자의 계약을 취소한다.

자.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차. 관련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02-504-0551)로 문의 바람

2020년 10월 22일

래미안슈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CCTV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래미안슈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배점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4.5	비고배점표		
		14	비고배점표		
		11	비고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20점)	기술자 등 보유 (5점)	5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2인 포함 5인 이상인 경우 만점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업무실적 증명서 - 5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시공 - 5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설계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5점)	5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제시사항 없음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사업 제안서 (2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5점)	15	1순위(20%)	공사수행 계획에 따른 제안서 기타 관리방안 등 평가	
		12	2순위(20%)		
		9	3순위(20%)		
		6	4순위(20%)		
		3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25	2순위(20%)		
		20	3순위(40%)		
		15	4순위(20%)		
		10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 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